

# 강사료 지급 규정

제정 1996. 04. 03.

제9차 개정 2018. 01. 26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교 외래교수위촉규정 제9조에 의한 강사료 지급과 전임교원 초과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0.2.29)

**제2조(지급 기준액)** 강사료 지급 기준액은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증액할 수 있다.

1. 특별강의 강사료
2. 출강하기 위하여 숙박을 요하는 경우의 강사료(숙박비포함을 말함) 단, 야간 4교시부터 적용함
3.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의 강사료

**제3조(지급)** ① 초과강사료는 전임교원이 책임시간 외에 초과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하되, 최대 12시간까지 지급한다. 다만, 책임시간이 감면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02.2.6, 2005.1.11, 2013.11.12, 2015.06.05., 2018.01.26)

② 외래교수 강사료는 외래교수가 강의를 담당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별표1에 의거 지급한다. (개정 2000.2.29, 2002.2.6, 2004.7.26, 2013.11.12)

③ 단위강좌 학생 수를 초과 할 경우에는 별표2와 같이 추가(가산) 지급한다.

④ 대학원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(항 신설 2015.06.05)

**제4조(지급의 특례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(외래교수포함)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02.2.6)

1. 시험기간
2. 교내 또는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한 때

**제5조(지급기일)** 강사료는 특별강의 강사료를 제외하고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199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200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기획예산과-555, 2004.7.23)

이 규정은 200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기획예산과-32, 2005.1.11)

이 규정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기획예산과-780, 2013.11.12)

이 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기획예산과-824, 2013.11.21)

①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3조(지급)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351, 2015.06.05)  
이 규정은 2015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51, 2018.01.26)  
이 규정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1) (개정 2013.11.12)

구 분	자 격 기 준	비 고
특A 외국인	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-타 대학(전문대 포함) 조교수 이상자(대우, 겸임, 초빙교원 포함), 박사학위 취득자 -기타 총장이 인정한 사람	숙박비 제외
특B 외국인	의사 면허증 취득자	
특급 한의사	한의사 면허증 취득자	
유경력자1	박사학위 취득자, 타 대학(전문대포함) 조교수 이상자, 관공서 사무관급 이상자, 기타 이에 준하여 총장이 인정한 자	숙박비 (해당자) 지급
유경력자 2	경력자 1의 자격 미달자	

(별표2)

초과율	인원수	추가지급액	비고
10%이상	165명 이상	5,000원 추가	
50%이상	225명 이상	10,000원 추가	
100%이상	300명 이상	15,000원 추가	